

한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가담한 한수원 이사들 업무상배임 고발

일 시 : 2018. 6. 28. 11:30,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1호기)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피고발인들 11명을 포함한 12명의 한수원 이사들이 참석하여 조성진 이사를 제외한 피고발인들 11명이 안전에 찬성하였다.
2.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2015년부터 3년간 그 원전 이용률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1호기를 2017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기간이 포함되어 그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다. 오히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78.3%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고, 가동중단으로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17년을 합해 최근 3년간의 이용률이 57.5%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인 54.4%를 웃돌고 있었다.
3. 더욱이 한수원은 이미 2012년까지이던 월성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하고 7000억 원이나 들여 새 원전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비와 연료비만 대면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대부분은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 가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내세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결정에 찬성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어기고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自害行爲)로서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한수원의 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한수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과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27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